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04호(사건번호 : 2021조일0125)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신축공사지 펜스 주변에 총 5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1.5.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1.6.8.)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05호(사건번호 : 2021조일0122)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공사 현장에 3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0.3.9.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작동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누락사항을 기재하여 시정 완료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06호(사건번호 : 2021조일0123)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공사 현장에 총 9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7.~'19. 사이에 설치·운영하면서 'CCTV 작동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일부 안내판에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누락사항을 기재하여 시정 완료함(21.7.5)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안번호	제2021-223-507호(사건번호 : 2021조일0113)
안건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	(주) (사업자번호 , 대표)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사업장 건물 외벽에 '18.5월부터 시설안전, 방범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3대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작동중' 안내판은 부착하였으나,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이후 조사과정('21.4.8.)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완료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안번호	제2021-223-508호(사건번호 : 2021조일0127)
안건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	(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건설공사 현장 가설올타리 외부에 총7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9.2.15.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녹화중', '감시카메라(CCTV) 촬영중'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1.7.30.)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안번호	제2021-223-509호(사건번호 : 2021조일0091)
안건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노후화로 관리자, 연락처 항목이 지워진 체로 운영되다가, 112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관 안내로 안내판을 재부착하여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완료('21.1.18.)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안번호	제2021-223-511호(사건번호 : 2021조일0118)
안건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	(고유번호 : <input type="text"/>) , 대표자 <input type="text"/>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사찰 내·외부에 8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0.5.20.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작동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1.2.23.~24.)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12호(사건번호 : 2021조일0046)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사업장 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2대를 '14년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작동 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1.3.25.)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13호(사건번호 : 2021조일0093)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p>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p> <p>※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p>	
이 유	
<p>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사업장 주변에 2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9.7월경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녹화 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p> <p>※ 이후 조사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완료함</p> <p>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 처분 한다.</p> <p>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p>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14호(사건번호 : 2021조일0042)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사업장 내·외부에 총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0.6.부터 설치·운영 하면서 'CCTV 작동 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CCTV를 철거하여 시정 완료함('20.10.)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안번호	제2021-223-515호(사건번호 : 2021조일0043)
안건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	()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다세대 주택 출입구에 1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9.6.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작동 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0.11.17.)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원장 강정화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이희정 (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안번호	제2021-223-516호(사건번호 : 2021조일0047)
안건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	()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사업장 내·외부에 총5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0.12.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녹화 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1.2.3.)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원장 강정화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이희정 (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안번호	제2021-223-517호(사건번호 : 2021조일0070)
안건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	()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주택 앞과 뒤에 2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작동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1.7.5)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2012-123)」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원장 강정화 (서명)

위원 백대용 (서명)

위원 이희정 (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18호(사건번호 : 2021조일0071)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김해시)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8층 복도 전체를 촬영하는 도어벨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이후 조사과정 중 안내판에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시정완료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19호(사건번호 : 2021조일0092)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20.5월경 이전 입주자로부터 사무실을 인계받아,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2대를 운영하면서 'CCTV 녹화 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이후 조사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완료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 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20호(사건번호 : 2021조일0120)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p>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p> <p>※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p>	
이 유	
<p>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연립주택 화단에 1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1.4.10.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작동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p> <p>※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1.6.25.)</p> <p>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p> <p>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p>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21호(사건번호 : 2021조일0121)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백대용 (생년월일 : 1980.12.25)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착한 안내판에 법에 정한 항목을 누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단독주택 내·외부에 3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7년 말부터 설치·운영하면서 'CCTV 녹화중'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였다.
 ※ 조사 과정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함(21.7.5.)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1-223-522호(사건번호 : 2021조일0090)
안 건 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주 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정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 사유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유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인 사업장 안의 지하복도(1층 출입구 연결통로)에 부착된 기존 안내판을 시설정비를 위하여 일시 제거하고 도색작업('20.7.5~16) 완료 후 신규 안내판을 재설치('20.07.20.)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2012-12호)」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위원장 강 정 화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